



소 방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**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계산방법 변경 알림**

1. 관련근거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
- 소방분석제도과-134(2020.7.31.)호 "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에 따른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보고방법 등 알림"

2. 2020.8.14.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·시행되고 있으며, 「민법」 제157조에 따라 "토요일 및 공휴일"이 제출기간에 포함되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긴 경우에는 관계인 및 점검업체 등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처리기간의 계산)를 참고하여 제출기간에는 **"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"** 「소방시설법 시행규칙」 제19조를 개정할 예정이니, 다음과 같이 제출기간을 계산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
〈자체점검결과보고서 처리기간 계산 방법〉

- 가.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나.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다.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.
- ※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일 : 2020.10. ~ 2021.6.

4. 행정사항 : 이 지침은 관련법령이 개정·시행되는 경우 자동 폐기됨. 끝.

소 방 청 장

수신자 서울특별시(예방과장), 부산광역시(재난예방담당관), 대구광역시(예방안전과장), 인천광역시(예방안전과장), 광주광역시(방호예방과장), 대전광역시(예방안전과장), 울산광역시(예방안전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대응예방과장), 경기도지사(재난예방과장), 경기도지사(예방과장), 강원도지사(예방안전과장), 충청북도지사(대응예방과장), 충청남도지사(화재대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방호예방과장), 전라남도지사(대응예방과장), 경상북도지사(대응예방과장), 경상남도지사(예방안전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(예방대응과장), 창원소방본부장(대응예방과장), (사)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, (사)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, 한국소방안전원장

★소방시설법 소방분석제도 전결 2020.9.25.

령 총괄 김문하 과장 배덕곤

협조자 소방경 홍성일

시행 소방분석제도과-808 (2020. 9. 25.) 접수
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(나성동) / www.nfa.go.kr

전화번호 044-205-7521 팩스번호 044-715-7621 / ekfsla530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스스로 당당한, 청렴한 119 !